『e커머스 정산채권 팩토링 기본약관』 개정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1조~제2조 <생략>	제1조~제2조 <좌동>	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~8. <생략>	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~8. <좌동>	
9. "팩토링 실행"이라 함은 판매업체가 은행에게 팩토링 신청을 한 후 은행이 팩토링 이자를 차감한 채권매입대금을 판매업체에게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.	9. "팩토링 실행"이라 함은 판매업체가 은행에게 팩토링 신청을 한 후 은행이 이 약관 및 판매업체 이용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매입대금을 판매업체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.	팩토링 실행 기준을 약관 및 이용약정서에 따른 표현으로 정비
10. <생략>	10. <좌동>	
<신설>	11. "팩토링 이자"라 함은 은행이 정산채권을 매입하여 채권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, 팩토링 실행일부터 정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.	팩토링 이자의 개념과 산정기간을 명확히 함
11.~17. <생략>	12.~18. <좌동>	제11호 신설에 따라 호 번호를 변경
<신설>	19. "중심업체 이용약정서"라 함은 은행과 중심업체 간에 체결되는「e커머스 정산채권 팩토링 중심업체 이용약정서」를 말합니다.	중심업체 이용약정서의 정의를 명시
18. <생략>	20. <좌동>	제11호 및 제19호 신설에 따라 호 번호를 변경
제4조~제13조 <생략>	제4조~제13조 <좌동>	